##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

제 정: 2007. 8.17

제 1 조(목적) 이 기준은 간접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펀드별로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계획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여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 및 대상자산) 이 기준은 회사내 운용담당자 등 간접투자재산운용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일체의 직원에게 적용하며, 대상자산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(이하 "업법"이라 한다.) 제 90 조 제 1 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투자증권, 장내파생상품, 단기대출, 간접투자증권, 외환선도환거래에 한한다.

제 3 조(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등) 회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펀드별로 관리하여야 하며, 간접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한다.

제 4 조(용어의 정의)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"사전자산배분"이라 함은 펀드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계획에 따라 매매결과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.
- 2. "펀드"라 함은 회사가 운용하는 회사형 또는 계약형 간접투자기구와 일임자문 포트폴리오를 말한다.
- 3. "운용담당자"라 함은 편드를 운용하는 직원을 말한다.
- 4. "매매담당자"라 함은 운용담당자로부터 매매주문을 접수하여 직접 자산의 취득, 매각 등을 실행하는 직원을 말한다.
- 제 5 조 (자산배분 원칙) ① 펀드별 자산배분은 특정수익자 또는 특정 펀드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아니하여야 하다.
- ② 펀드별로 취득, 매각한 자산은 균등한 가격으로 배분되어야 한다. 단, 균등한 가격은 다수의 펀드에 대해서 동시에 주문하는 경우에 한한다.
- ③ 동일한 종목에 대한 펀드별 배분은 지정가격이 아닌 경우에는 주문접수 순으로 배분한다. 이때, 주문시각이 다른 동일종목에 대한 각각의 주문은 별개의 주문으로 본다.
- ④ 취득, 매각한 자산의 수량이 매매주문 수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리 정한 펀드별 배분비율에 따라 자산을 배분하여야 한다.
- ⑤ 펀드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고,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.
- 1. 법규 등(약관, 운용계획서 포함) 위반 및 위반 방지를 위한 수량 정정 또는 펀드 정정
- 2. 매매체결 후 예상치 못한 중대한 설정고 증감으로 인한 수량 정정 또는 펀드 정정
- 3. 위 사유 외의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

- 제 6 조 (사전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의 공시) 회사는 자산배분에 관한 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하여야 한다.
- 제 7 조 (자산배분내역에 관한 장부 및 서류) ① 자산의 취득, 매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매매하고자 하는 자산에 대하여 펀드별로 주문금액 또는 수량, 가격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와 펀드별 배분계획을 기재한 자산 배분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매매주문서 및 자산배분내역서는 전산으로 기록 유지되어야 하며, 부서장 및 준법감시인이 이행내역을 확인하여야 한다.
- ③ 자산배분내역서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제 5 조 제 5 항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전산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 8 조 (매매주문서의 작성) ① 운용담당자는 펀드별로 종목, 주문금액 또는 수량, 가격, 주문시각 등을 기재한 매매주문서를 전산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매매주문서상의 종목은 특정종목, 증권업협회의 채권종류별, 신용등급별 종목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.
- ③ 매매주문서상의 가격주문은 해당자산의 단가 혹은 수익률 등으로 표시되며, 지정가격, 시장가격뿐만이 아니라 범위를 정하여 매매담당자 에게 매매가격을 일임하거나 범위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할 수 있다. 이때 별도의 가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위없이 매매담당자에게 일임하여 주문한 것으로 본다.
- ④ 제 1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주문 시 펀드별로 주문계좌를 지정하여 다수종목에 대한 매매주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종목, 수량만을 작성하고, 매매금액 및 가격 등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.
- 제 9 조 (매매주문의 실행) 매매담당자는 사전에 작성된 매매주문서를 기초로 하여 주문을 실행하여야 한다.
- 제 10 조 (자산배분내역서의 작성) ① 매매담당자는 매매주문서와 체결내역서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내역서를 전산상에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자산배분내역서에는 체결된 종목에 대하여 체결가격, 배분가격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.
- ③ 펀드별로 매매주문서와 상이한 수량으로 배분될 시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.
- 제 11 조 (운용담당자와 매매담당자간 겸직금지) 제 2 조에 정하는 자산에 대해 운용을 담당하는 직원과 직접 자산의 취득, 매각 등의 실행하는 직원을 분리하여야 한다. 다만, 간접투자자산운용업감독규정 제 71 조에서 정하는 투자신탁별 개별계좌 거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 1 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.